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7-30 조례 제4032호
개정 2007-10-08 조례 제404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7-10-08 조례 제4045호
개정 2007-11-12 조례 제4101-1호
개정 2007-12-24 조례 제4123호
개정 2007-12-24 조례 제4124호
개정 2007-12-24 조례 제4136호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08-05-19 조례 제4173호
개정 2008-05-19 조례 제4176호
개정 2008-08-04 조례 제4188호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08-08-04 조례 제4191호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2008-08-04 조례 제419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8-11-24 조례 제42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9-01-12 조례 제4241호
개정 2009-05-04 조례 제4292호
개정 2009-09-28 조례 제4319호
개정 2009-10-05 조례 제4334호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0-02-22 조례 제439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0-03-29 조례 제4400호
개정 2010-04-26 조례 제4412호
개정 2010-08-30 조례 제4846호
개정 2011-04-04 조례 제4907호
개정 2011-10-24 조례 제4972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2012-01-02 조례 제5035호
개정 2012-05-21 조례 제5101호
개정 2012-10-02 조례 제5145호
개정 2012-11-09 조례 제5163호
개정 2013-01-04 조례 제518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3-02-21 조례 제5203호
개정 2013-05-27 조례 제5233호
개정 2013-07-29 조례 제5256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3-07-29 조례 제525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4-01-23 조례 제5324호
개정 2014-05-26 조례 제53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6]

제2조(약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를 말한다.
2. "의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말한다.
3.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시장"은 인천광역시장을 말한다.
5.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말한다.
6. "시"는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7.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8. "법", "영"은 각각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4-26]

제2장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33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12-24>

<개정 2010-4-26><개정 2012-1-2>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7-12-24><개정 2012-1-2>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매월 120만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 매월 30만원

③ 월정수당의 지급액은 연 4,151만원으로 하고,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12-24>

④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12-24><개정 2010-4-26>

⑤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12-24><개정 2012-1-2>

1.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2.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강령) 법 제38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1-2>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5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사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검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② 제 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제7조의2(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제2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

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09-28]
<개정 2012-1-2>

제8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장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개정 2008-5-19><개정 2012-1-2>

제4장 지방의회의 권한

제11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삭제 2010-3-29>

제12조(감사 및 조사) <삭제 2011-10-24>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삭제 2011-10-24>

제14조(활동기간의 조정) <삭제 2011-10-24>

제15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삭제 2011-10-24>

제16조(과태료) <삭제 2011-10-24>

제17조(선서의 방식) <삭제 2011-10-24>

제18조(실비보상) <삭제 2011-10-24>

제19조(징 계) <삭제 2011-10-24>

제2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삭제 2011-10-24>

제21조(준용) <삭제 2011-10-24>

제2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 <제목개정 2013-5-27> ①

법 제42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 <개정 2013-5-27>

1. 시장
2. 교육감
3. 부시장, 부교육감

4.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본부·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개정 2010-8-30>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10.8><개정 2010-2-22><개정 2010-4-26><개정 2012-1-2><개정 2013-1-4>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개정 2012-1-2>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 (교육장) <개정 2012-1-2>
 8.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2-1-2>
 9. 제6호의 교육기관 및 제7호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2-1-2> <개정 2014-5-26>
 10.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2-1-2> <개정 2013-5-27>
 11. <삭제 2013-5-27>
- ② 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7>
1.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2.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의 임원

제5장 회기운영

제23조(회의일수) ① 법 제44조· 제47조 및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연간 회의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하되, 회의총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2-1-2>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매년도 회기운영계획을 늦어도 1월 3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4-1-23>

제2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주 화요일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주 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실시되거나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

제6장 위원회 관리

제2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정수) <제목개정 2014-5-26>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2012-1-2>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4-5-26>
 3. 문화복지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4-5-26>
 4.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4-5-26>
 5. 건설교통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4-5-26>
 6. 교육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4-5-26>
- [전문개정 2010-4-26]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목개정 2014-5-26>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대변인실, 감사관실,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소방안전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재)인천발전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국제교류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인재육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시설관리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의료관광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인천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인천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차. (사)인천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수도추진본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카.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타. 인천유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5. 건설교통위원회

가.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
는 제외한다.

마.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위원회

가.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본항전문개정 2014-5-26]

제2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0-4-26><개정 2012-1-2>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제목개정 2014-5-26>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0-4-26>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

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6>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26>

제2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2-1-2>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0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7> <개정 2014-1-23>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

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 <개정 2013-5-27>

④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영 제56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27>

제3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제목개정 2013-5-27>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4-5-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14-5-26>

제3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3조(부위원장) <제목개정 2012-10-2>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개정 2012-1-2><개정 2012-10-2>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2-10-2>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10-2>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해당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 2012-1-2>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

⑤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

1. 위촉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2>
2. 신체,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전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전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또는 위촉안전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개정 2012-1-2>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

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3.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 인천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5.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6. 인천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07-10-08 조례 제4042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 ⑧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2항제5호가목중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국”으로, “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부칙<2007-10-08 조례 제4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12 조례 제4101-1호>

제1조 <삭제 2010-03-29>

제2조 <삭제 2010-03-29>

제3조 <삭제 2010-03-29>

부칙<2007-12-24 조례 제4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4 조례 제4124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4 조례 제4136호(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 조례)>

① 생략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제마목 본문중 “인천환경시설공단”을 “인천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2008-05-19 조례 제4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5-19 조례 제4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04 조례 제4188호(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라목 중 “(재)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로 한다.

부칙<2008-08-04 조례 제4191호(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8-04 조례 제419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24 조례 제4230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절 서울 사무소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9-01-12 조례 제4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4 조례 제4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4319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5 조례 제4334호(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다목 중 "지하철공사"를 "인천메트로"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2010-02-22 조례 제4399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단서 중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은”을 “인천대학교
는”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나목 중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가정복
지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을 “인
천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부칙 <2010-03-29 조례 제4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26 조례 제4412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30 조례 제 4846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4 조례 제4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4 조례 제4972호(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2-01-02 조례 제5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21 조례 제5101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2 조례 제5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간사는 이 조례에 의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1-09 조례 제5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04 조례 제5185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제2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인재개발원, 인천대학교”를 “인재개발원”
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2013-02-21 조례 제5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27 조례 제5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9 조례 제5256호(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다목 중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으로 한다.

부칙 <2013-7-29 조례 제5258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가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⑧~⑬ 생략

부칙 <2014-1-23 조례 제5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출자·출연기관 대상기관란 중 “(재)인천국제교류센터”를 “(재)인천국제교류재단”으로 하고, “(재)인천문화재단” 다음란에 “(재)인천광역시강화고려역사재단”을 신설한다.

부칙 <2014-5-26 조례 제5363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9-01-12>

국내여비지급표(제3조제5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인천광역시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3조제5항제2호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 동 차 운 임	등급별 국외여비 지급기준				준 비 금		
					등급	일 비 (1일 당)	숙박 비 (1야 당)	식 비 (1일 당)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 부의장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급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 에는 그 승선에 요하 는 실비액	1등 정 액	실 비 액	가 등급	40	205	133	150	180	210
					나 등급	40	149	99			
					다 등급	40	118	72			
					라 등급	40	100	61			
의 원	○공무상의 사유로 인 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 하여 침대요금을 필 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 액		가 등급	35	166	107	140	170	195
					나 등급	35	120	78			
					다 등급	35	92	58			
					라 등급	35	79	49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준비금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13-05-27>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 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택일)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주 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 신고기한 : 임기개시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임기중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신고)